

 국토교통부		보도참고자료		국민의 마음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
		배포일시	2018. 11. 14(수) 총 11매(본문 10매)	
담당 부서	도시정책과	담당자	• 과장 정의경, 사무관 천재민, 주무관 양승길 • ☎ (044)201-3706, 3708, 3711	
	녹색도시과	담당자	• 과장 안경호, 사무관 심인보 • ☎ (044) 201-3742, 3745	
	첨단자동차기술과	담당자	• 과장 이재평, 사무관 서형우 • ☎ (044) 201-3847, 3851	
	항공교통과	담당자	• 과장 유경수, 사무관 김남극 • ☎ (044) 201-4294, 4299	
	하천계획과	담당자	• 과장 강성습, 사무관 정정희 • ☎ (044) 201-4613, 4099	
	첨단항공과	담당자	• 과장 오원만, 사무관 류나린 • ☎ (044) 201-4307, 4315	
	자동차운영보험과	담당자	• 과장 이대섭, 사무관 김창범 • ☎ (044) 201-3855, 3860	
	국토정보정책과	담당자	• 과장 이상철, 사무관 김일 • ☎ (044) 201-3458, 3463	
	규제개혁 법무담당관	담당자	• 과장 김명준, 사무관 정나선, 주무관 윤성민, 허준 • ☎ (044) 201-4818, 4816	
보도일시		11월 15일(목) 11:00(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종료) 이후 사용		

제5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신산업 발전을 막는 규제를 혁파하겠습니다.

- ‘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’ 참고자료 -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11월 15일 제5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(국무총리 주재)에서 국무조정실 및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그간 발굴해왔던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과제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.
-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과제의 대표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.

① 친환경차(수소차·전기차) 분야

△ 수소차 충전인프라 확산 △ 사업화 촉진 및 행정부담 완화 △ 투자 및 운영부담 완화에 중점

【과제①】 《준주거 및 상업지역 내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등》

▶ 도심에서 쉽게 충전할 수 있도록 준주거·상업지역에 수소충전소 설치가 허용 됩니다. -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-

애로 준주거·상업지역 내는 설치 불가(일반주거, 공업지역 등 가능) → 충전 불편

개선 준주거·상업지역에 수소충전소 입지제한 완화 ('18.11.15. 입법예고)

* 조례로 설치 허용(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, 시·군)

☞ **(효과)** 교통량이 많은 도심에서 충전소 접근이 용이하게 되어 수소차 보급 확대 기반 마련

* 기존 LPG충전소·주유소에 융복합 형태로 구축할 수 있는 부지 수요조사 결과,
준주거·상업지역 내 가능 부지는 11개소('18.9월말 기준,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)

▶ 수소충전소(3,000m³ 초과)를 보다 빠르게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없이 설치가 허용됩니다. -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개정 -

애로 3,000m³ 초과* 수소충전소는 도시계획시설(가스공급설비)로 결정·설치 필요 → 절차이행**에 최소 5개월 ~ 1년 소요

* 3,000m³ 이하는 도시계획 결정 없이 설치 가능

** 도시계획 결정 → 시행자 지정 → 실시계획인가

개선 3,000m³ 초과 수소충전소를 도시계획 결정 없이 설치 허용('18.11.15. 입법예고)

☞ **(효과)** 수소충전소 설치 절차 간소화로 시간·비용 절감 가능 → 충전인프라 조기 확산에 기여

□ 현재 일반주거·공업지역·녹지지역 등은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하나, 준주거·상업지역은 설치 불가하여 수소차 이용자의 주활동영역에서 충전이 불편하였습니다.

○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업지역, 준주거지역 등 도심지역의 수소자동차 충전소 입지 제한을 완화, 도심지 내에서도 충전소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하여 수소자동차 확산을 지원하고,

○ 도시계획시설(가스공급설비) 결정을 필수로 받아야 했던 3천m³(설치용량) 이상의 수소 충전소에 대하여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추가 완화하였습니다.

- 국토교통부는 수소충전소 규제개선 과제의 실행을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·시행규칙」 일부 개정안을 11월 15일자로 입법예고(∼' 18.12.26, 참고)하였습니다.

【과제②】 《 개발제한구역내 버스차고지 등에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》

▶ **개발제한구역 내 버스차고지·압축천연가스(CNG) 충전소에 수소충전소 병행 설치가 허용됩니다.** -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 -

애로 개발제한구역 내 버스차고지·CNG 충전소에 융복합 형태로는 설치 불가(수소충전소 단독 설치 가능)

개선 개발제한구역 내 버스차고지·CNG 충전소에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('18.12월)

☞ **(효과)** 구역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충전인프라 확대 가능, 버스차고지 내 수소충전소 설치로 수소버스 보급* 기반 마련

* ' 22년까지 1천대 보급 목표

- 개발제한구역에서 단독 시설로 수소차 충전소를 허용하고 있으나, 부지확보가 어려워 단독으로 설치된 사례는 없었습니다.

- 수소차 인프라 확충 및 보급 확대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차 충전시설을 천연가스 충전소나 버스 차고지에 복합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【과제③】 《 수소차 내압용기 부품 등 인증기준 개선 》

▶ **수소차 연료용기 부품에 대한 인증기준을 개선하여 제작사의 이중개발 부담을 완화합니다.** -수소차 내압용기 안전기준의 국제기준 조화 -

기존 수소차 연료용기 부품에 대한 국내외 인증항목 기준 차이*로 이중개발 부담

* 국내 9종, 북미 15종, 일본 13종 등

개선 국제기준 심층분석 및 내압용기 제작사, 자동차 관련 부품 제작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국제기준과 조화 추진 ('19.12월)

☞ **(효과)** 해외기준과 국내기준 차이에 따른 제작사의 이중개발 부담 완화

- 수소차 내압용기·부품의 기준은 국가별로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국가 간 통상마찰 및 제작사의 이중개발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.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소차 개발·생산 국가들은 국제기준을 마련하기 시작('13년~)*하였습니다.

* 자동차 기준 국제조화 회의(UN/ECE/WP.29): UN/ECE 산하 자동차안전기준 국제협의기구

- 우리나라도 제작사의 이중개발 부담 등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소차 부품의 '낙하 및 진동시험' 등 국제기준의 시험항목을 도입할 예정이며, 그 시기는 유럽·미국 등의 국제기준 도입 시기*를 고려하여 '19년 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.

* 일본은 기 도입('17년)했으며, 유럽과 미국은 내년('19년) 도입을 검토 중

2 드론 분야

△ 드론비행 환경 개선 △ 드론활용 서비스 촉진 △ 드론이용자 행정부담 완화에 중점

【과제④】 《 한국원자력연구원 주변(대전) 드론비행 전용구역 신설 》

▶ 비행금지구역인 대전지역에 비행 테스트,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을 위한 드론전용 비행구역 신설 추진 -시범운영 후 전용구역 신설 -

애로 대전은 원전주변 비행금지구역 규제로 드론전용 비행구역 신설에 애로

개선 비행금지구역 중 금강 일부지역(대전시 문평동 인근)을 드론전용 비행구역으로 지정 추진 ('19.3월)

* 우선 비행관리 등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범운영('18.12.~'19.2.) 후 드론전용 비행구역(비행승인 불필요) 지정 추진

☞ **(효과)** 비행 테스트를 위해 고흥 등 원거리까지 이동했던 불편 해소, 연구개발 단계 제품을 즉시 테스트 할 수 있어 드론 개발 활성화 촉진

* 대전에 드론 제조업체(29개), 항우연·KAIST 등 연구기관 위치

- 대전 지역에 많은 드론 관련 업체가 위치하고 있으나, 원자력 연구원과 관련하여 대전 전역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* 규제로

인해 기술개발과 연계된 시험비행을 위해서는 현재 별도의 비행 승인을 받거나, 가능지역으로 장거리 이동 후 하고 있습니다.

* (비행금지구역 범위) 원자력연구원 반경 18.5Km. 고도는 지상~18,000피트

- 이에 국토교통부는 대전지역 비행금지구역을 완화하여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서 자유롭게 시험비행을 할 수 있도록 “드론전용 비행구역”을 신설할 계획입니다.

【과제⑤】 《 하천둔치등에 드론공원 관련 시설 설치근거 명확화 》

▶ 하천지역 내에 점용허가를 받아 드론공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화합니다. -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개정 -

애로 하천구역내 드론비행장 등 드론공원 관련시설 설치근거 불명확

개선 하천점용허가 대상에 '무인비행장치 비행이 가능한 공간·시설'을 명시하여 법적근거 명확화 ('18.10.31.시행)

☞ **(효과)** 지자체 등에서 주도적으로 드론공원 조성 가능 → 드론 레저 활성화 및 국민생활 속 저변 확대에 기여

- 여가를 위해 드론을 날리는 사람들의 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하천구역 내 드론공원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.

- 이에 하천의 철저한 유지·관리와 함께, 하천공간에서 자유롭게 드론을 체험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명확화*하여 하천지역에도 드론공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.

* 「하천점용허가세부기준」 개정 완료(10.31)

【과제⑥】 《 고층건물 주변 드론비행 고도정비 》

▶ 고층건물 화재점검, 시설진단 편리성 등을 위해 건축물 밀집 지역 내 드론 비행승인이 불필요한 고도범위가 확대됩니다. -드론비행 고도기준 정비-

기존 지면 또는 건축물 상단을 기준으로 150m 이내로만 비행 가능

* 수평범위 부재로 고도기준이 위치별로 급격히 변동 → 고층건물(150m이상)의 경우 150m 초과 외부는 시설점검 불가

개선 건물 밀집지역에서 고도기준을 드론을 중심으로 수평거리 150m 이내 가장 높은 건물의 상단 150m로 규정

☞ **(효과)** 고층건물 화재점검, 시설진단 등 도심지역 내 드론 비행 편리성 제고

□ 현재 초경량비행장치가 지면 또는 물건의 상단 기준으로 150미터 이상 고도에서 비행 시 항공기와 충돌방지 등을 위해 비행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○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서 드론을 비행하는 경우 비행 승인 필요 고도기준이 위치별(지면·물건)로 급격히 변동되어 소방목적 등의 드론 활용에 제약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.

* 수평범위 기준이 부재하여 고도기준이 위치별로 급격히 변동하는 고층건물 (150m 이상)의 경우 150m를 초과하는 건물 외부는 시설점검 등이 불가

□ 이에 국토교통부는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의 경우 승인 없이 비행 가능한 고도를 해당 초경량비행장치를 중심으로 수평거리 150미터 범위 안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 150미터로 개정할 계획으로,

○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8조 및 제310조를 11월중에 개정완료 할 예정입니다.

【과제⑦】 《 초경량 교육용 드론에 대해 비행금지구역내 비행방안 마련 》

▶ 교육용 드론 등 저위험 드론을 비행승인 없이 보다 쉽게 날릴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. - 저위험 드론 비행구역 확대 -

기존 서울·대전 도심, 관제권(비행장주변 반경 9.3km) 등 비행금지구역에서는 학교에서 초경량 교육용 드론(250g이하, 완구용급)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비행승인 필요 → 드론 교육 활성화 저해

개선 완구·레저용(250g) 등 저성능 드론의 경우 일정 운용요건* 준수 시 비행승인 없이 비행가능한 범위를 확대

* 카메라 등 외부장착물 탑재 불가, 고도 20m 이하·비행거리 50m 이하 등

 **(효과)** 완구·레저용 드론 산업 및 드론 활용 교육 서비스 활성화

□ 드론이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위험도가 낮은 드론이 위험도가 높은 드론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아 활용규제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.

□ 이에 국토교통부는 위험도가 낮은 완구·레저용 250g 이하*의 드론에 대해서는 일정 운용요건** 준수 시

* 미국·EU(250g이하), 일본(200g이하)도 저위험 드론에 대해서 규제 최소화

** 카메라 등 외부장착물 탑재불가, 비행고도 20m 이하, 비행거리 50m이하 등

○ 비행승인 없이 비행 가능한 범위를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중이며, 관련 하위법령을 내년 상반기에 개정할 예정입니다.

【과제⑧】 《 초경량비행장치 등록업무 등 민원처리 절차 정비 》

▶ 급증하는 드론 장치신고* 신속처리를 위해 인력을 충원하고 드론전용 비행정보 시스템을 구축**하겠습니다. - 드론 기체신고 부담완화 -

* (' 15년) 925대 → (' 16년) 2,172대 → (' 17년) 3,894대 → (' 18.9월) 6,207대

** 현재는 비행기, 헬리콥터 등 일반 민원과 동일 민원처리시스템(원스톱시스템)에서 처리 중

□ 드론 보급이 급속도로 확산됨에 따라 드론 기체 신고가 폭증하게 되어 신속한 민원처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.

- 이에 국토교통부는 신속한 민원처리와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빠른 민원처리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부24로 기체신고 서비스를 이관하였습니다.
- 아울러 내년 상반기까지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인력을 지방 항공청에 확충하고, 내년 연말에는 드론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드론 장치신고, 비행승인, 항공촬영 등의 드론 관련 민원 창구 일원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.

3 주요 신산업 분야

△ 신산업 활성화 △ 신시장 진입 촉진 △ 기업부담 완화에 중점

【과제⑨】 《자동차 데이터베이스(DB)의 유종 정보 제공으로 혼유사고 방지》

▶ 국가관리 자동차DB 정보 중 유종 정보의 실시간 제공으로 혼유사고를 방지하고 신산업 창출 및 창업확대로 일자리 발굴에 기여하게 됩니다.

- 자동차DB 유종 정보 제공 -

기존 차량등록증 정보(차종번호, 유종 등) 비공개로 혼유방지 서비스 제공에 활용 불가

개선 혼유방지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유종 정보를 실시간 제공 ('19.3월)

☞ **(효과)** 국가 DB 활용으로 새로운 사업 창업 및 혼유사고* 예방

* 혼유사고 보험금 청구 현황('13. 1. 1.~'16. 4. 30.): 7,423건, 273억 원

□ 국가가 관리하는 자동차DB 정보는 일반인에게는 개인정보 보호등의 사유로 이용이 제한되어 왔으나, 최근 국가 소유 공공 데이터에 대한 개방 수요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.

- 이에 국토교통부는 공공 데이터 개방의 일환으로 자동차DB 정보 중 개인정보 식별의 우려가 있는 차량번호와 차대번호 외의 자동차

등록정보는 민간에게 개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,

- 이번에는 유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('19.3월*)하여 혼유사고를 방지하고 신산업 창출 및 창업확대에 따른 일자리 발굴에 적극 기여할 계획입니다.

* 「자동차 종합정보 개방체계 고도화사업」('18.11~'19.3)을 통해 추진

【과제⑩】 《 고해상도(25cm급) 항공사진 공개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》

▶ 도시개발, 건축설계, 지도제작, 학술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간정보를 활용한 신산업 창출이 활성화 됩니다.

기존 25cm급 항공사진은 광역시 등 일부 지역만 공개

* 전국 단위로는 해상도 50cm급 이상만 공개

개선 25cm급 고해상도 항공사진의 공개지역을 전국으로 확대

☞ **(효과)** 측량·지도제작, 도시설계 등 공간정보 비즈니스 창출에 활용

* 제공실적: '18.9월말 기준 62,487건 제공(전년 동기 대비 50.3% ↑)

- 기존에는 해상도 50cm급 이상의 항공사진은 전국 단위로 공개가 가능하고, 25cm급 고해상도 항공사진의 경우 수도권과 광역시 일부 지역에 한해서만 공개가 가능하였습니다.
- 따라서, 해상도가 정밀하지 못하여 지형·지물 등의 위치 확인이 어렵고, 주제별 지도제작과 공간정보 분석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었습니다.
- 이에 국토교통부는 제도개선을 통해 25cm급 고해상도 항공사진의 공개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함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공간정보를 활용한 신산업 창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



- * 해상도 : 공간적으로 물체를 인식할 수 있는 크기를 말하며, 값이 작을수록 더 작은 물체를 자세히 식별할 수 있음.

	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천재민 사무관(☎ 044-201-3708, 과제1관련), 녹색도시과 심인보 사무관(☎ 044-201-3745, 과제2관련), 첨단자동차기술과 서형우 사무관(☎ 044-201-3851, 과제3관련), 항공교통과 김남극 사무관(☎ 044-201-4299, 과제4관련), 하천계획과 정정희 사무관(☎ 044-201-4099, 과제5관련), 첨단항공과 류나린 사무관(☎ 044-201-4315, 과제6,7,8관련), 자동차운영보험과 김창범 사무관(☎ 044-201-3860, 과제9관련), 국토정보정책과 김일 사무관(☎ 044-201-3463, 과제10관련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--	--

□ 수소충전소 입지규제 완화

- 상업·준주거지역 등 용도지역에서의 수소충전소 입지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개정
- ☞ 도심지 내 부지에 수소차 충전소를 건설하여 수소자동차 확산 지원
- 가스공급설비 중 수소차충전소는 도시계획 결정 없이 개별법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임의시설로 변경하여 절차 간소화
- ☞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절감, 다양한 수요 대응

□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기부채납 대상 확대

- 현재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개발밀도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필요한 기반시설*을 설치하거나 부지를 제공토록 규정
- * 도로·공원·학교 등 도시기능 유지·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시설(총 52종)
-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에 공공임대주택 등 조례로 정하는 시설도 기부채납이 가능토록 개선
- * 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로 공유재산으로 관리하는 경우로 한정
- ☞ 서울·수도권 등의 대규모 부지 개발 시에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의 적기 확보 도모

□ 입법예고 기간 : 2018년 11월 15일 ~ 2018년 12월 26일

- * 의견제출처: 339-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
(전화: 044-201-3708, 3711, 팩스 044-201-5569)